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4. 6. 20(목) 10:00

## 제250회 금천구의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
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52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## 2. 제안이유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 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○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조례상의 정의를 규정함

####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#### 3)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
○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4)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
○ 2017년 8월 제작되어 금천구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금천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·관리함으로써, 주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등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440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본군위안부 피해자”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(性的)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.

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,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4.>

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4.>

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(그 대리인을 포함한다)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제11조(기념사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24., 2017. 12. 12.>

1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
2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·연구
3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
4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
5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19.]

**제11조의2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)**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2. 12.]

**제12조(경비의 보조)**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·법인·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19.]

**제13조(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19.]